

# 해외 주요국의 농식품 이력관리제도 운영 실태\*

황 윤 재

## 1. 오주의 이력관리제도

호주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2005년에 소, 2006년에는 양과 염소에 대한 이력제가 의무화되어, 국가가축식별시스템(National Livestock Identification System, NLIS)을 통해 운영하고 있다. 기타 품목에 대해서는 취급업체가 이력추적이 가능하고, 정보 또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법령(Australia New Zealand Food Standards Code)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 돼지 이력제가 빅토리아주와 퀸즐랜드주 등 일부 주에서 시행되고 있다.

### 1.1. 소 이력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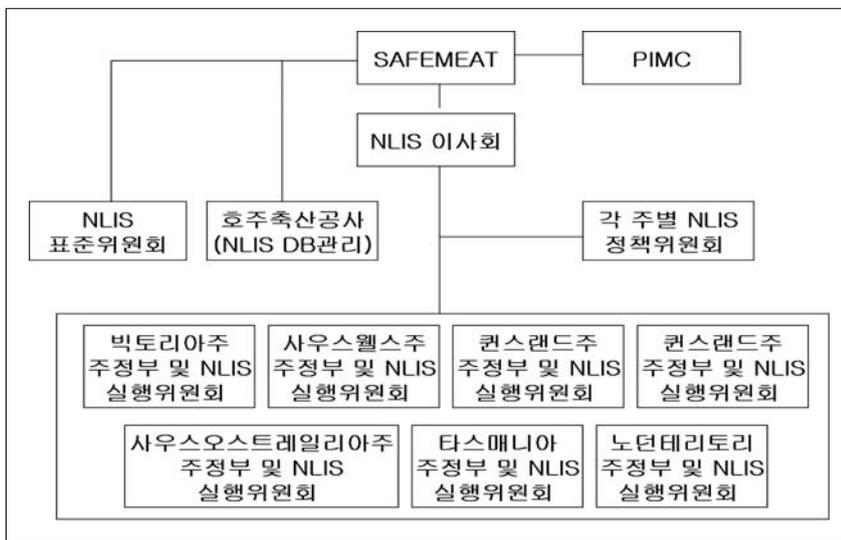
호주의 소 이력추적제도는 EU가 쇠고기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호주에서 수출되는 쇠고기에 대한 개체별 이력정보를 요구함에 따라 도입되었다. 1999년에 빅토리아 주 정부가 주도하여 NLIS를 도입한 것이 호주 소 이력제의 시작이다. 1960년대 이후 1990년대까지는 소의 꼬리표를 통해 가축 개체별 사육농가를 인식하였으나 1999년에 전자 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본격적인 이력추적 시스템의 시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 본 내용은 '농식품 이력관리체계 확대 및 활성화 방안 연구' (2011)를 바탕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황윤재 부연구위원이 작성하였다(yjhwang@krei.re.kr, 02-3299-4247).

호주의 소 이력추적시스템은 가축의 출생단계부터 도축단계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소 이력관리는 제도 도입 초기에는 선택사항이었으나 빅토리아주가 2002년부터 이력관리를 의무화하였으며, 2005년 7월 1일부터는 호주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도축단계까지의 이력관리가 의무화되었다. 현재 도축단계 이후의 이력관리는 업계 자율로 실시되고 있다.

호주는 축산업계와 정부로 구성된 협력기구인 ‘SAFEMEAT’에서 이력추적제도를 총괄·추진하고 있으며, 실제 운영은 NLIS 이사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밖에 개체식별방법 등 NLIS 관련 표준규격은 NLIS 표준위원회, DB 관리는 호주축산공사(Meat and Livestock Australia, MLA)에서 담당한다.

그림 1. 호주의 쇠고기이력추적제 추진체계



자료 : 축산물품질평가원, 2010.

이력추적시스템에서는 소 공급체계를 통한 가축의 이동이 인식·기록되어 NLIS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 소의 개체식별체계는 NLIS번호와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Device)번호 등 2종류의 식별체계로 운영되며, 도축 이후 쇠고기는 생체번호(body number)로 인식된다.

NLIS 번호는 소의 개체별 고유번호로 전자귀표 외부에 인쇄되어 있어 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번호이며, RFID 번호는 전자귀표안에 저장되어 있는 번호로 육안으로는 식별

할 수 없으며, 전산으로 관리되는 번호이다. NLIS 번호 중에서 PIC(Property identification code) 코드는 소의 개체별 인식을 가능케 함으로써 이력추적시스템의 근간을 이루는 식별 코드이다. 이는 각 지역의 고유토지식별 코드로, 주정부에 의해 농장별로 발급되어 각 축산물이 어느 지역에서 왔는지를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표 1. 단계별 이동신고 내용

생산농가	가축시장	비육농가	도축(가공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VD(출하지증명서) 발급</li> <li>- NVD는 농장등록번호(PIC), 개체수, 이동장소, 동물약품 등 사용여부 등의 정보 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체식별 및 이동신고</li> <li>• 이동신고내용</li> <li>- RFID 번호(RFID 시스템에 의해 자동등록)</li> <li>- 출하농가 PIC(농장등록)코드</li> <li>- 구입농가 PIC 코드</li> <li>- NVD 발급번호</li> <li>- 이동일자</li> <li>- 경매가격(선택사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가간의 이동시 신고</li> <li>- 소개체식별번호</li> <li>- 생산농가 PIC 코드</li> <li>- 생산농가 NVD 번호</li> <li>- 구입농가 PIC 코드</li> <li>• 출하시 NVD 발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하농가 NVD 보관</li> <li>• 출하된 소의 이동신고</li> <li>• 도체정보 등록(RFID 시스템에 의해 자동입력)</li> <li>- 도축일자</li> <li>- 도체번호</li> <li>- 도체중량</li> </ul>

자료 : 축산물품질평가원, 2010.

생산부터 도축단계까지 단계별로 소의 이력추적을 가능케 하기 위해 이동신고와 관련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생산농가는 귀표를 구입·장착하며, 출하지증명서(National Vendor Declaration, NVD)를 발급받고, 가축시장에서는 개체식별 및 이동신고가 이루어진다. 비육농가는 농가 간 이동시 신고를 하고 출하 시 NVD를 발급받는다. 또한 도축단계에서는 출하농가의 NVD를 보관하며 출하된 소의 이동 신고를 하고, 도축 후 도체정보를 등록한다.

이력 정보 등록은 웹사이트, 컴퓨터 소프트웨어, 팩스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웹사이트의 경우 정보를 입력하는 모든 주체의 접속을 허용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는 농가, 도축장 등 현장에서 사용되는 자체 소프트웨어와 연계되어 웹사이트로 데이터를 전송한다. 농가가 팩스로 호주축산공사의 Helpdesk로 신고할 경우에 한해 호주축산공사가 수기로 입력을 대행하는 경우도 있다.

## 1.2. 양·염소 이력제

양과 염소에 대한 이력제는 2006년 1월 1일부터 의무화되어 연방정부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다. 2006년 도입 시에는 귀표를 이용하였으며, 2007년부터는 전자식 NLIS 표식이 기존의 NLIS 귀표를 대체하여 이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양·염소 사육 농장들

은 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농장등록번호(PIC)를 발부받아야 한다.

양과 염소는 출생농장을 떠나기 전에 NLIS 귀표로 인식되어야 한다. 귀표는 NLIS 로고와 함께 PIC가 인쇄되어 있으며, 번호를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009년 1월부터는 모든 양과 염소는 연령과 상관없이 출생농장에서 다른 토지(농장) 또는 가축시장 등으로 이동하기 전에 NLIS의 사육자 표식(Sheep Breeder or Post Breeder tag)을 통해 인식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착유 목적으로 사육된 염소와 바로 도축되는 야생 염소의 경우에는 이력제 예외조항이 적용되고 있다.

일부의 경우 귀표가 RFID칩을 포함하고 있으나 소 이력제와는 달리 개체별로 이를 검색하는 것이 의무사항은 아니다. RFID태그를 이용하는 생산자들은 자발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태그 번호를 기록할 수 있다. 양·염소가 공급체인을 따라 이동하면서, 생산자, 가축시장, 수출업자, 도축장 등은 종류, 숫자, PIC, 이동일자, NVD 번호 등을 기록하기 위해 NVD를 이용한다.

### 1.3. 수산물 이력제

호주는 국내유통 및 수출 수산·수산가공품에 대해 이력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호주정부는 이를 위한 기준을 법령(Australia New Zealand Food Standards Code)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 1.3.1. 국내유통 수산물

국내 유통되는 수산물의 이력제에 대한 기준은 “Australia New Zealand Food Standards Code”의 제4장 “Primary Production Standards”의 Standard 4.2.1의 11항을 통해서 제시되고 있다. 이는 뉴질랜드를 제외한 호주에만 적용되는 기준이다.

규정에 의해 수산업체는 수산물을 업체에 직접 공급한 공급자와 업체로부터 수산물을 직접 공급받은 수령인(구매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기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조항은 수산물에만 해당하며, 업체는 포장 또는 기타 투입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할 필요는 없다.

혼합된 수산물의 경우 수산물 혼합 업체는 이력추적을 통해 리콜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혼합되는 묶음(batch, 배치)을 알아야 하며, 가이드라인에서는 업체가 쌍각류 조개의 경우에는 배치를 혼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sup>1)</sup>

1) 조항 17은 쌍각류 조개(bivalve molluscs)에 대해서는 이력추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다른 배치들은 분리해서 작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업체들은 종종 세척 또는 무게 또는 숫자를 맞추기 위해 배치를 혼합하지만, 식품 안전의 견지에서 이는 패류의 원산지를 확인하는 것을 어렵게 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이를 방지하여 업체가 각 배치의 조개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시된 기준이다.

---

어획(wild catch)단계 기록은 선박명, 어획일자, 물고기 종류, 어획지역, 양식업체는 물고기 종류, 양식장, 개별 묶음(배치)의 어망, 수확일 또는 시간, 구매업자와 판매시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어획의 경우 선박항해일지 등이 이러한 목적을 충족할 수 있으며, 선박이 여러 날 해상에 있는 경우 업체는 상이한 날에 잡은 어획물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패류의 경우 업체는 양식업자·공급업자에 관한 정보를 보존하여야 한다. 특히 패류가 다른 업체로부터 온 경우 임대 번호, 수확지역명, 수확일자, 패류의 종류와 품질 등에 관한 정보, 또한 수산물이 무게, 유형, 포장 등이 다양하다면, 포장에 대한 세부사항도 포함되어야 한다.

업체가 어떤 배치의 제품들이 어떤 수령인에게 갔는지를 알기 위해 기록에는 제품이 언제 발송되었는지, 발송된 제품의 세부설명, 운반업체, 받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밖에 업체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추적을 할 수 있도록 안전하지 않은 수산물이 시장에 유통되었음을 인식할 경우 이를 신고할 정부기관목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는 유통이 주간 또는 국가 간에 이루어졌을 경우 이력추적이 다른 관할지역간에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요구된다. 이밖에 고객들에게 식품이 반환되는 것을 보증하는 권고(리콜대상인 수산물에 대해서 누구를 접촉할지 그리고 어떠한 행동을 취할지 등)와 어느 정도의 수산물이 여전히 푸드 체인 상에 있고 어느 정도가 반품되었는지 평가하기 위한 계획 등이 필요하다.

서류는 전자서류를 포함하고 영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공급업체와 고객 리스트, 인보이스, 기타 목적으로 작성된 기록도 이 조항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다. 업체들은 접근할 수 있는 장소 또는 전자형태의 기록일 경우에는 바로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기록을 보존하여야 하며, 이러한 기록을 얼마나 오래 보존할지 결정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기록은 수확일 또는 인도일 이후에 유통기한에 6개월을 더한 기간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 1.3.2. 수출수산물

수산·수산가공품(fish and fish products)의 수출은 “Export Control (Fish & Fish Products) Orders 2005(the Orders)”, “Export Control (Prescribed Goods General) Order 2005(the PGGOs)”, “Export Control Act 1982(the Act)”에 의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이중 “the Orders”는 효과적인 식품 안전과 제품에 대한 적절한 절차와 정확한 설명에 근거한 교역의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력추적과 관련한 조항을 담고 있다. 호주 정부는 이 조항을 충족하기 위해 이력추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식재료로서 수출되는 수산물과 그 가공품은 이력추적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공급업체의 것만 이용하여야 한다. 이력추적제의 적용대상 업체는 수산·수산가공품의 준비과정에 관련된 모든 등록업체(registered establishment)이며, 수출서류를 발행하는 기관도 포함된다.

이력추적 대상 업체와 기관은 이력추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수산물과 수산물가공품에 대한 1) 세부설명 2) 로트내의 양 3) 로트 인식번호 4) 준비일(preparation date)과 5) 업체에 의해 수확된 수산물과 수산가공품에 대해서는 수확일과 장소 등에 대한 정보를 기록해야 한다.

등록업체는 식재료를 다른 호주검역검사청(Australian Quarantine and Inspection Service, AQIS) 등록업체에 발송하는 경우 이전인증서(Transfer Certificate)의 형태로 각 배송물에 대한 정보를 서면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발송 시 전달되어야 할 정보에는 1) 발송업체의 이름, 주소와 등록번호 2) 수산 제품에 대한 세부설명 3) 수산제품의 이동시 보관온도 4) 배송되는 수산제품의 양과 패키지의 수 및 기타 설명 5) 수입국명 5) 수산 제품을 발송 받을 업체명과 주소, 등록번호 등이 있으며, 신선패류 수출에 대해서는 부가적으로 수확업자의 성명, 수확지역의 명칭과 임대번호, 수확일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1.4. 기타

### 1.4.1. 우유·유제품

호주는 “Australia New Zealand Food Standards Code”의 4장 “Primary Production Standards”(Standard 4.2.4. Primary Production and Processing standard for Dairy Products)를 통해서 생산부터 가공단계까지 취급업자 간 정보전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규정에 의하면 생산단계에서 우유생산업체(dairy primary production business)는 1) 원료 2) 착유우 3) 우유제품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집유와 운송단계의 경우 운송업체들은 전·후단계의 공급업체와 수령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이밖에 유가공업체는 바로 전단계의 유제품 또는 원료 공급업체와 가공 이후의 제품 수령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 1.4.2. 돼지

소와 양·염소에 대한 이력제를 제외한 축산물 이력제는 일부 주에서만 시행된다. 대표적으로 돼지 이력제가 빅토리아주와 퀸즐랜드주에서 시행되고 있다. 빅토리아주, 퀸

---

즐랜드주 등에서 추진되고 있는 돼지 이력제는 개체별 관리가 아니라 농장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다. 돼지가 이동해야 할 경우 양도증명서(PigPass National Vendor Declaration, PPNVD)가 필요하며, 양도증명서에는 PIC 번호, 다른 비육장 또는 도축장을 포함한 돼지의 이동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PigPass를 얻기 위해서 농장주는 해당 주 정부의 1차 산업성에 PIC 번호, 돼지 낙인 번호<sup>2)</sup> 등을 요청해야 한다.

각 주에서는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토지가 소재한 농장에 농장등록번호(PIC)를 발부한다. 이를 통해 돼지의 출생지와 소재지를 인식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농장주는 또한 돼지에 브랜드를 낙인하거나 귀표를 달아서 PIC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PIC 번호는 최소 8자의 숫자와 문자로 이루어져 있다. 빅토리아주의 PIC는 3단위 숫자, 4단위 문자와 3단위 숫자를 차례로 조합하여 이루어진다.

## 2. 일본의 이력관리제도

일본은 쇠고기이력추적제와 쌀이력추적제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의무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쇠고기이력추적제의 경우 일본에서의 BSE 발생을 계기로 2003년부터 도입되었으며, 쌀 이력추적은 2010년부터 의무화되었다. 쇠고기와 쌀을 제외한 일반 농산물에 대한 이력추적제는 품목별, 지역별로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이력추적제와 비슷한 생산이력제도가 농협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각 기록사항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알기 쉽게 정보를 취득하도록 전산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수산물의 경우에도 농산물과 유사하게 품목별, 지역별로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일본은 농림수산성의 정책적 지원 하에 식품사업자의 자율적인 이력추적제의 시행을 촉진하기 위해 ‘식품이력추적시스템 도입 안내’ 및 품목별 ‘이력추적도입가이드라인’을 작성하였다. 농림수산성에서는 모든 식품에 통일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기본적인 내용을 제시하기 위해 2002년부터 ‘식품 이력추적시스템 도입 가이드라인 책정위원회’를 구성·대응하여 2003년 ‘식품이력추적 도입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으며, 2006년 이후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가이드라인의 일부를 개정하였다.

---

2) 브랜드 번호, Swine Brand Number 또는 Pig Tattoo Number 등.

표 2. 일본의 품목별·업태별 이력추적시스템 도입 가이드라인 책정현황

품목별 업태별 가이드라인	책정년도
청과물 이력추적제 도입가이드라인	2004
돈육 이력추적제 도입절차	2008
계육 이력추적제 도입절차	2008
계란 이력추적제 도입가이드라인	2004
국산쇠고기 이력추적제 도입 매뉴얼(총론편/도축장편/부분육가공장편/외식점편/불고기점편)	2003
양식어의 이력추적시스템 가이드라인	2006
김의 이력추적시스템 도입절차	2006
조개류(굴·가리비)의 이력추적시스템 가이드라인	2005
이력추적제 구축을 위한 외식산업가이드라인	2004
원재료기업·가공식품기업간 원재료입출하이력정보소급시스템 가이드라인	2004

### 2.1. 소·쇠고기 이력제

일본은 1997년 쇠고기이력제 추진을 위한 시범사업을 전국적으로 8개현에서 실시하였으며, 2001년 9월 광우병 발생으로 국내산쇠고기의 소비가 급감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전두수 광우병 검사와 함께 소 개체식별제도를 도입하였다. 2002년 6월에는 “소 개체식별을 위한 정보관리 및 전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2003년 12월 부터 생산단계 이력제를 추진하였으며, 2004년 12월에는 도축이후 유통단계까지 의무화하여 실시하였다.

쇠고기이력추적제는 “소 개체식별을 위한 정보관리 및 전달에 관한 특별조치법(쇠고기이력추적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농림수산성이 귀표 관리 및 장착 업무를 총괄

표 3. 일본의 쇠고기 이력제 추진 체계 및 주요 업무

구분	주요 내용
농림수산성 소비안전국	• 귀표 관리 및 장착
지방농정국(농정사무소)	• 소 관리자, 도축자, 판매업자 등에 대한 지도·감독
(독)가축개량센터	• 소 개체식별 대장의 작성 및 기록에 관한 사무 • 소 개체식별대장에 기록된 사항의 공표에 관한 사항 • 개체식별 번호 체제관리 및 귀표 공급 등
(사)식육격부협회	• 도축장에서 모든 지육으로부터 보관용 DNA 샘플을 채취하여 가축개량기술연구소에 전달 우리나라의 축산물품질평가원에 해당*
가축개량기술연구소	• 식육격부협회에서 보내온 보관용 DNA 샘플 보관 • 지방농정사무소 등이 유통단계(부분육, 지육)에서 채취한 샘플과 DNA 동일성 검사 실시

하고 있으며, 지방농정국(농정사무소)은 소 관리자, 도축자, 판매업자 등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밖에 ‘가축개량센터’는 소 개체식별 대장 작성 및 기록에 관한 사무와 개체식별 번호 체계 관리 및 귀표 공급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가축개량센터는 개체식별번호와 함께 소에 관한 사항과 취급관련인에 대한 정보 등을 관리하여 소 개체식별대장을 작성한다.

소 이력추적제는 생산단계에서 소매단계까지 이루어지며 대상사업자는 생산자(소 관리자), 도축장 영업자, 식육 판매업자, 특정요리 제공업자 등이다.<sup>3)</sup> 생산단계에서 소 관리자는 출생·수입신고와 귀표장착, 가축개량센터는 소 개체대장을 작성하고, 개체식별정보를 기록·보관한다. 귀표에는 개체식별번호가 표시되어 있으며, 귀표탈착과 귀표가 없는 소의 양도·양수는 금지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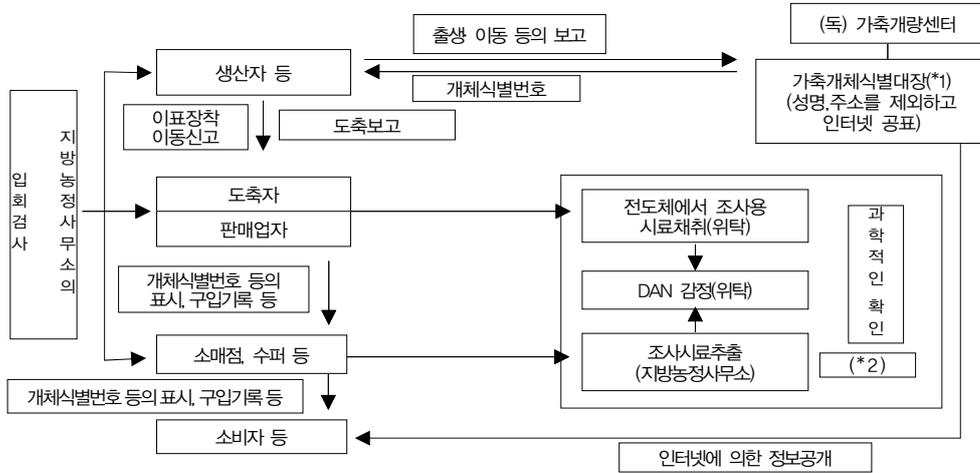
표 4. 일본의 가축개량센터 관리 정보

정보항목	비고
개체식별번호	
출생년월일(수입년월일)	
성별	
종별	
모우개체식별번호	수입된 소는 제외
관리자(사양자·소유자)의 성명(명칭), 주소, 관리개시연월일	관리자의 이름·주소는 해당자가 동의 했을 경우에 한해 공표
사양시설소재지, 사양개시연월일	도도부현명 공표, 소재지는 해당자 동意的한 경우에 한해 공표
도축장명(명칭), 소재지, 도축년월일(사망 또는 수출연월일)	도축장명, 소재지는 해당자가 동의했을 경우에 한해 공표
수출·수입국명, 수출·수입자성명(명칭), 주소	수출·수입자의 이름(또는 명칭), 주소는 해당자가 동의했을 경우에 한해 공표

2010년 4월1일 부터 소 관리자는 사망신고 시 개체식별번호, 사망 연월일과 함께 사망소인도처(처분처)의 명칭, 주소 및 연락처, 코드번호를 신고하여야 하는데, 소의 출생, 전입, 전출, 사망 신고 등은 팩스 또는 전화,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3) 특정요리 제공사업자는 쇠고기를 주 재료로 하는 특정요리(야키니쿠, 샤브샤브, 스키야키, 스테이크)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법으로 정한요건(요리전문점으로, 제공하는 요리가 주로 ‘특정요리’ 일 것)에 해당한다.

그림 2. 일본의 소·쇠고기 이력제 추진 절차



주 1: 가축개량센터(독립행정법인)가 소의 정보를 기록·관리함.  
 주 2: 식육격부협회에서 도출된 소도체에서 DNA 조사용 시료 채취, 지방 농정사무소 직원의 입하하에 소매점에서 시료 채취, 도체와 부분육 시료의 동일성 DNA 감정에 의해 확인함.  
 자료: 축산물품질평가원, 2010.

도축단계에서 도축업자는 가축개량센터에 도축연월일 등을 제출하고, 지육을 인도할 곳에는 개체식별번호 등을 전달하여야 하며, 유통단계에서는 쇠고기 판매업자와 특정요리사업자들은 판매처에 개체식별번호를 전달해야 한다.

표 5. 일본의 소·쇠고기 이력제 대상업종·사업자

취급단계	이력제 대상
생산단계	생산자
도축단계	식육시장(중앙, 지방), 산지식육센터, 기타 도축장
부분육 제조·도매단계	식육 도매업자(식육시장 구매 브로커, 매참자 포함), 식육 가공메이커, 식육상사, 식육처리업자, 정육제조업자
소매단계	정육 팩 공장, 식육 전문 소매점, 식품슈퍼, 체인스토어-점포(식육 판매장), 생활협동조합점포(택배 업무 포함)
소비단계	특정요리제공업자

자료 : 농림수산성 웹페이지.

## 2.2. 쌀 이력제

쌀 이력추적제는 쌀 및 쌀 가공품을 대상으로 생산단계에서 유통단계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단계별 사업자들에게 기록을 작성하고 보존할 의무와 산지정보를 전달할 의

무가 주어지고 있다. 사업자간 거래 등의 기록 작성·보존 의무는 2010년 10월 1일부터, 산지정보의 전달의무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쌀 이력추적제는 “미곡 등의 거래에 관련한 정보기록 및 산지정보의 전달에 관한 법률(쌀이력추적법)”의 적용을 받는다. “쌀 이력추적법”은 1) 쌀 및 쌀가공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유통경로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생산부터 판매·제공단계까지의 각 단계를 통해서 거래 등의 기록을 작성·보존하고 2) 쌀의 산지 정보를 거래처나 소비자에게 전달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력추적 대상사업자들은 쌀 및 쌀가공품을 거래하거나, 사업자간 이동, 폐기 등을 했을 경우에 그 기록을 작성·보존해야 하며 사업자간 그리고 일반소비자에게는 산지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표 6. 일본의 쌀 이력추적제 대상품목

구분	주요 품목
미곡	벼, 현미, 정미, 싸라기
주요 식량	미분(쌀가루), 미곡을 쪄낸 것, 미분조제품(떡가루(모찌분)조제품포함), 쌀과자생지(生地), 쌀누룩 등
쌀밥류	각종도시락, 각종주먹밥, 라이스버거, 팔밥, 찰밥, 쌀밥을 조리한 것, 포장쌀밥, 발아현미, 건조쌀밥류 등의 모든 쌀밥류(냉동식품, 레토르트식품 및 통조림류 포함)
쌀가공식품	떡(모찌), 경단(단고), 쌀과자, 청주, 단식증류(單式蒸溜)소주, 미림

자료: 농림수산성 홈페이지.

대상사업자들은 거래 시 품명, 산지, 수량, 연월일, 거래처명, 반출입 장소, 용도를 한정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 등에 대해서 기록해야 한다.<sup>4)</sup> 산지기록의 경우 ‘국산’ 또는 ‘지역명’과 함께 원재료 관련 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거래(매매)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업소간에 반입·반출을 하여 미곡 등을 이동시켰을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기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산지 기록을 할 필요는 없다.

거래 등을 하는 경우에 실제 거래에서 주고받은 전표류(또는 장부도 가능)에 기록을 하도록 요구되는 사항을 포함시켜 기록하고 보존하면, 기록·보존의 의무가 완수된다. 수령·발행한 전표 등이나, 작성한 기록 등은 3년간 보존하여야 하지만, 소비기한이 있는 상품에 대해서는 3개월, 유효기한이 3년을 넘는 상품에 대해서는 5년간 보존할 필요가 있다.

4) 용도한정 미곡이란 가공용쌀, 신규수요미, 비축미, 구분출하미 또는 국가 및 미곡안정공급확보지원기구가 용도를 한정해 판매한 쌀을 말한다.

산지정보전달의 의무의 경우 1) 쌀·쌀가공품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전표 등 또는 상품의 용기·포장에 기재하여 산지 정보를 전달하여야 하며, 2) 일반소비자에게 쌀·쌀가공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쌀 이력추적법”에 근거하여, 산지정보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사료용, 바이오에탄올원료용 등의 비식용 미곡에 대해서는 산지정보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JAS법으로 원료 원산지 정보 표시의 의무가 있는 편미·정미·떡은 현재와 같이 표시하면 되며, 외식점에서는 쌀밥류의 경우에만 산지 정보를 표시하면 된다. 외식업체의 경우 메뉴판 등을 활용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고, 소매점에서는 산지정보를 상품에 직접 기재하거나, 웹사이트 또는 전화 등을 통해 전달할 수 있다.

산지 정보를 상품에 직접 기재하는 경우 국산미의 경우는 ‘국내산’, ‘국산’ 등으로 기재하거나 도도부현이나 일반적으로 알려진 지명을 표시하며, 외국산의 경우 해당국명을 기재하면 된다. 원산지를 기재할 때는 원재료에 포함된 비율이 높은 순으로 산지를 기재하고, 산지가 3개국 이상일 때에는 상위 2개국을 기재하고 기타의 산지에 대해서는 ‘기타’로 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웹사이트를 통해 산지정보를 전달하는 경우에는 상품 등에 웹사이트주소와 함께 웹사이트를 통해 산지정보를 얻을 수 있음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전화 등을 활용한 문의를 통해 산지정보를 알려주는 경우에도 전화번호와 함께 상담전화를 통해 산지정보를 알려주고 있다는 점을 표시해야 한다.

### 2.3. 기타

일본은 지방정부와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수산물 이력추적제를 지역별·품목별로 시행하고 있다. 일본의 수산물 이력추적시스템은 기존의 위생검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시작되었으며, 이를 통해 일본 내 원산지 표시 위조의 방지, 생식용·가열조리용, 소비기한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에 대한 신뢰형성을 도모하고자 한다.

수산물이력추적시스템은 2002년 수입산 굴 혼입 판매 및 원산지 위장표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 신뢰회복과 위해요소를 최소화하는 리스크 대책 마련이라는 필요성에 의해 도입되었다. 2002년 식품수급연구센터가 미야기현산 양식굴을 대상으로 사업개발과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사단법인 해양수산시스템협회와 대일본수산회는 농림수산성 위탁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천연 및 양식 어패류를 대상으로 이력추적시스템을 개발하였다.

표 7. 일본의 수산물이력추적 도입 사례

연도	품목	시행처	추적방법
2000	중국산장어	(주)마루하	QR 코드
	수산가공(가리비, 새우, 장어구이 등)	현 마루하니치로수산	QR 코드, CSV파일
2002	굴	(사)식품수급연구센터, 미야기생협	QR 코드, CSV파일
	방어	(사)식품수급연구센터, 미야기생협	식별번호
2004	김	어업협동조합 연합회 김 가공업자	지면기록
	활납치	후쿠시마초	QR 코드
	방어	쿠로세수산 주식회사	식별번호
	참돔, 수입연어, 장어, 방어, 수입다랑어	이온(AEON)	식별번호
2005	재첩	아오모리현 주수산호	QR 코드
	다시마, 가자미	후쿠시마초	QR 코드
	성게	샤리초	QR 코드
2006	꽁치	앗케초	QR 코드
	은어	겸승양어어업생산조합	QR 코드
	대구알	노보리베츠시	QR 코드
	활조피볼락	무로란시	QR 코드
2008	홍살치	샤리초	QR 코드
	재첩	오가와라호어업협동조합	QR 코드

이밖에 일본의 사단법인 식품수급연구센터에서는 우유, 계란 등 다수의 품목에 대해 이력추적을 시행하기 위한 가이드라인과 외식업체에서 이력추적을 도입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제공하고 있다. 우유·유제품에 대해서는 낙농업계 또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이력추적시스템의 도입이 시도·시행되고 있으며, 외식업체의 경우 이력추적이 의무화되어 있는 쇠고기 취급 외식업체<sup>5)</sup>를 제외하고는 이력추적이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외식업체는 일반 업체부터 체인점 형태까지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력추적에 대한 대처도 다를 수밖에 없다.

### 3. 맺음말

호주, 일본의 농식품 이력관리제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호주, 일본은 BSE 통제와 식품 안전성 확보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하여 소·쇠고기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이력제를 도입·추진 중에 있다. 호주, 일본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쇠고기 이력제

5) 쇠고기를 주재료로 하는 특정요리, 야키니쿠, 샤브샤브, 스키야키, 스테이크 등.

를 시행하는 대부분의 국가는 이력추적 전산시스템을 국가 또는 축산관련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데이터베이스 운영은 중앙집중식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농장식별, 소개체별 식별, 동물이동기록, 개체식별번호 회수의무 등 이력제 추진을 위한 주요 사항들이 공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력제의 적용단계, 시행방법 등 기타 세부적인 운용방법은 국가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대부분의 이력제 시행국가에서 전산시스템 등록의무가 사육에서 도축단계까지 적용되고 있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불고기나 스테이크 등 특정요리를 취급하는 음식점에 대해서도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호주는 다른 국가와 달리 농장식별번호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함께 소비자에 대한 소·쇠고기 이력추적 정보 제공을 하고 있는 국가이다.

둘째, 호주, 일본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소·쇠고기 이력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면서 비교적 상세한 규정과 전산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시행하는데 비해 여타의 품목에 대한 이력제는 대부분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셋째, 호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쇠고기 이력추적제의 주요 시행 목적은 추적 가능성을 갖추으로써 질병통제, 식품 안전성 확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함께 일본의 경우 예외적으로 소·쇠고기의 이력추적제도가 이력추적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며, 이에 따라 판매단계에서 개체식별번호에 대한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된다. 여타의 품목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력제 추진은 전후방의 이력정보의 인식을 통한 추적 가능성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본의 경우 쌀 이력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산지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쌀 이력제 추진을 위한 별도의 전산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지는 않으며, 전후방으로 연결된 사업자간 이력관련 정보를 전달하고 기록을 유지할 의무를 관련인들에게 부여할 뿐이다. 호주의 수산물과 우유의 경우에도 이력추적을 위해 단계별로 관련인들에게 요구되는 사항은 전후방의 이력정보의 파악이다.

넷째, 이력제 시행이 의무화된 품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가이드라인 제시를 통한 이력제 방향 설정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일본의 경우 소·쇠고기와 쌀을 제외한 품목의 이력제에 대해서는 국가의 역할은 제도 및 시스템 운영이 아니라 시스템 개발과 가이드라인 구축을 지원하는 데에 있다. 호주의 경우에도 소, 양·염소를 제외한 수산

---

물, 우유 등의 경우에 법령을 통해 이력추적제 적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전체적인  
틀을 제시할 뿐, 실제 적용은 생산부터 유통단계까지의 관련업체에 의해 이루어진다.

### 참고문헌

축산물품질평가원. 2010. 「주요국의 축산물이력제도」.

일본 농림수산업성 [www.maff.go.jp](http://www.maff.go.jp)

일본 식품수급연구센터 [www.fmric.or.jp](http://www.fmric.or.jp)

호주 식품기준청(FSANZ) [www.foodstandards.gov.au](http://www.foodstandards.gov.au)

호주축산공사(MLA) [www.mla.com.au](http://www.mla.com.au)